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231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3. 11. 15.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제231호
--------------	-------

제출연월일 : 2023. 11. 15.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과장

1. 제안이유

-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 폐지 등으로 인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때, 급수공사비 일부를 감면하거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 시행 시 급수공사비 일부를 감면 또는 지원
- 나.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 지침」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폐지 및 지방상수도 전환 공급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기획감사실-11509호(2023. 10. 27.)]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정책과-32455호(2023. 10. 30.)]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예산실-11939호(2023. 10. 13.)]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10. 10.(화) ~ 2023. 10. 31.(화)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041-635-4480)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급수공사비 일부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용가에서 가정용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2. 가정용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할 예정인 경우
3.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이미 폐지한 수용가에서 가정용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상 하 수 도 과 장	윤 기 암
	상 수 도 팀 장	김 창 배
	담 당 자	김 영 재 (746-6383)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안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급수공사비 일부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사 1건당 공사비: 금1,500,000원(금일백오십만원)
 - 분담금(수수료 등) 포함, 개소 수: 1개소, 수도계량기: 16mm 기준
 - ※ 공사 현장마다 분담금 등의 공사비 산정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1건당 공사비는 변동될 수 있음.
- 2024년 급수공사 감면 예상: 70건
 - 총 182건 중 수질기준 부적합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폐지에 따른 급수공사: 약 37건
 - ※ 2023년 급수공사 현황(2023. 10. 5.까지 준공 완료된 가정용에 한함)
- 감면 비율: 100분의 50 감면(예정)

나. 추계결과

구	분	세	부	내	역	금액(천원)
계						50,000
시	설	비				
	(401-01)		○ 750,000원 × 70건 ≒ 50,000,000원			50,000

3. 작성자

상하수도과장 윤 기 암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공기업특별회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일반회계 전입금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세 출 (공기업특별회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시 설 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 원 조 달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 조 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공 모 사 업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 지침

35쪽 6) 지방상수도 전환 공급

가)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설치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시설을 폐쇄하고 지방상수도 전환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중 수질기준 초과 사례 등이 발생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조속한 시일 내 시설 폐쇄 및 지방상수도 전환 공급